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1
------	-----

2023.03.0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최민규 의원(찬성자 1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3.3.)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민규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과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2022년부터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 을 추가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응모 기관이 없어 용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음.

- 이에 사회투자기금의 운용방식을 수행기관을 활용한 채용자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을 변경함(안 제1조).
-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다.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라. 사회적경제계정 신설에 따른 기금구성, 용도, 관리공무원, 운용심의회 구성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11조의2).
- 바.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의 공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 사. 용자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상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 아. 기존의 「서울특별시 사회

- 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자.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계정으로 승계하고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계정의 기금 운용계획은 종전의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을 따른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고, 운용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행토록 하고자 발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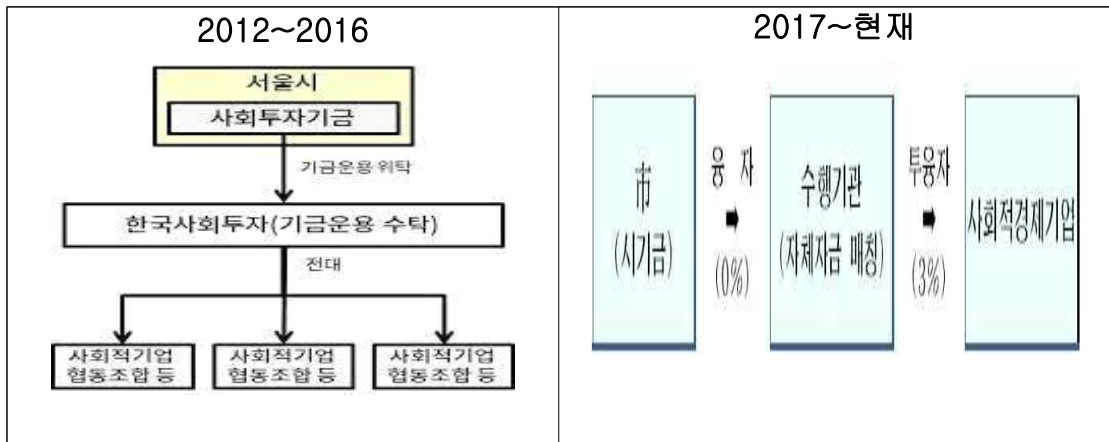
나. 사회투자기금 운용 부진과 기금 통합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용중임.
- 사회투자기금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5.7.24.)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위탁운용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 서울시가 기금을 운용함.
- 현재까지 1,652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1,051개 사회적경제기업과 482명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게 융자를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된 투자사업은 3개 소셜임팩트펀드에 30억원을 출자했으나 2022년부터 추가적인 출자가 이뤄지지 않음.

- 용자사업은 공모로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시가 무이자로 용자하고, 수행기관이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하는 형태로 운영됨.

<사회투자기금 용자 업무 흐름도>



- 그러나 일부 수행기관의 ▶이해관계 업체 용자, ▶회원사 한정 또는 우대 용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의무 소홀, ▶동일기업 중복 용자, ▶용자채권 부실화로 인한 수행기관의 변제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됨¹⁾.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해충돌 범위 명확화, 제재방안(협약해지, 환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을 추가했으나,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2022.7.)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²⁾으로 기존의 수행기관들이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이 중단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사회투자기금을 대체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을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하는 방식에서 대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용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다. 주요 조문별 검토

(1) 근거 법률의 변경(안 제1조)

-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 ----- -----.

- 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2) 10억원을 5년간 용자시 수행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는 6천만원으로,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하여 얻는 이자수입(연간 약 2%)에 비해 과다하여 공모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사업체가 다수임.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신설(2022.1.28.시행)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개정안은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계정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p> <p>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p> <p>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p> <p>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p> <p>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p>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투자기금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인용하면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 비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p> <p>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p> <p>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p> <p>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p> <p>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상법」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며, 「민법」상의 사단·재단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³⁾.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취지와 중소기업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함.
-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예비사회적기업, 자활노동사업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⁴⁾과 독립성 기준⁵⁾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중소벤처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함.

(3) 계정의 구분(안 제3조, 제6조)

-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투자기금을 통합하면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외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추가해 기금의 목적에 따라 계정을 각각 구분함.

3)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함.

4)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2. (생략) <신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② (생략) ③ 시장은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의 지원 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 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 -----. 1.·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계정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다음 각 호의 계정----- -----.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 ----- -----. ④ (현행과 같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을 통합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생략)

② (생략)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계정의 조성 자원(안 제4조)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계정의 조성 자원을 ▶시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등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략) <u><신설></u>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호의 자원으로 조성한다.</u>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④ -----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 ----- -----

- 「사회투자기금조례」는 민간 기부금과 서울시 출자금을 합쳐서 운용하고자 기금의 조성 자원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을 포함함.

<기금의 조성 자원 관련 규정 비교>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1.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3.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u>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u>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1.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u><삭제></u>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투자기금의 기부금 수령 주체는 위탁기관(2013~2017) 또는 수행기관(2017 이후)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계정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수령제한 대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용을 대행할 예정으로, 조성 재원에서 기부금품 관련 규정을 삭제함.

(5)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안 제5조)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를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사회투자기금조례」와 비교하면 ▶ 기금운용을 대행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불필요해진 수행기관 관련 규정(제2·6·7호)을 삭제하고,

- ▶ 코로나19의 종료와 사회적배려대상 관련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규정(제4호⁶⁾)을 정비했으며,
- ▶ 사회주택 사업의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제8호)을 삭제하고,
- ▶ 일반회계로 시행이 가능한 공모사업 관련 규정(제9호)을 제외함.

<기금의 용도 관련 규정 비교>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삭 제>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삭 제>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 사업비 지원	<삭 제>
7. 수행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삭 제>
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	<삭 제>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삭 제>

(6) 사회적경제계정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안 제7조)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계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정경제담당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함⁷⁾.

6)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된 고용취약계층 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사업이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각각 사회복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에서 별도 사업이 실시됨.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은 개별조례(「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실시 근거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담당관(용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p> <p>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용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p> <p>②·③ (생략)</p>	<p>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분임기금운용관 가. 용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나.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p> <p>3. 기금출납원 가. 용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사회투자기금조례」는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금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구체적인 직위를 명시함.

(7)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9조)

-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계정 분야의 당연직 위원에 공정경제담당관을 지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추가함.

7)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 지출관리를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할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설치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용자계정: <u>소상공인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u></p> <p>2. (생 략)</p> <p><신 설></p> <p>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u>금융인</u>,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생 략)</p>	<p>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소상공인담당관</u></p> <p>2. (현행과 같음)</p> <p>3. 사회적경제계정 : <u>공정경제담당관</u></p> <p>4. ----- ---- <u>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u>,----- -----</p> <p>③ (현행과 같음)</p>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정별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정별로 전문성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비교하면 위원의 정수, 위원장의 신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서 차이가 있음.

<기금운용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위원 정수	15명 이내	10명 이내
위원장 신분	위촉직 중 호선	기금운용관(노동공정상생정책관)
당연직 위원 자격	1.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2. 재정담당 부서장	공정경제담당관
위촉직 위원 자격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3. 금융인 4. 사회적경제 전문가 5.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투자기금에 비해 위원 정수가 축소되었고,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 저하와 집행부의 일방적인 운영이 우려됨.
- 따라서 사회적경제계정에 한하여 당연직과 임명직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시정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8) 사회적경제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11조의2, 제16조)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와 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2), 공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제 11조 및 제12조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 제11조, 제11조의2,----- -----.</p>

- 이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자금(융자계정)이나 창업투자(투자계정)를 지원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계정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9) 용자지원 수혜 기업의 변경사항 통보의무(안 제19조)

- 개정안은 용자지원 수혜 기업이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금융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 또는 제 12조에 따라 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 제11조 <u>의2</u> ,----- ----- ----- ----- ----- -----.

- 「사회투자기금조례」는 투·용자지원 수혜기업의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임.
- 다만, 사회투자기금 투자사업에 따른 지원은 서울시나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 수혜기업의 변경사항 통보 의무는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수행기관의 공모 불참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투자기금을 수혜대상이 유사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적된 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채권 부실화 우려 등을 해소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또한, 사회투자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방기금법」이 개정(2021.1.5.)되면서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개정안은 수행기관 채용자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다른 운용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투자기금을 폐지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개선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7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71
----------	--------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개선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다음” 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 바.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p> <p>가. ~ 바.(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제3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적경제계정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으로 한다.

-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가. 용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 나.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가. 용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2.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3.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용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제11조 및”을 “제11조, 제11조의2,”로 한다.

제19조 중 “제11조 또는”을 “제11조, 제11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2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사회적경제계정에 승계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사회적경제계정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2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1조(목적) ----- ---- 「<u>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항제1호----- ----- ----- ----- -----.</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사회적경제기업</u>”이란 「<u>중소기업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u>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u>」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나. 「<u>협동조합 기본법</u>」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p> <p>다.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p> <p>라.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p>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2. (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략)

<신설>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동)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동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제3조의3(계정 간의 구분) -----
-----.

1.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계정

제4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동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④ -----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
-----.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3. 기금의 관리·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동)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동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시장은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의 지원사업 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인담당관(용자계정), 경제정책과장(투자계정)

3. 기금출납원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용자계정),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투자계정)

②·③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용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나.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3. 기금출납원

가. 용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용자계정: 소상공인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장

<신 설>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생략)

<신 설>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제11조 및 제12조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1. 용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 2.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 3.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 제11조, 제11조의2,-----
-----.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 제11조의2,-----

-----.